

Online Series

2023. 10. 06. | CO 23-33

시급한 북한 억류자 문제해결

이 규 창(인권연구실장)

김 수 압(인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 북한 억류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이듬해 5월 30일 재판을 받고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파괴암해죄, 비법국경출입죄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 등 우리 국민 6명이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

<표> 한국인 북한 억류 현황

성명	체포날짜	재판날짜	적용범죄	형벌	영사접견
김정욱	13.10.8	14.5.30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무기노동교화형	×
김국기	14.10.1	15.6.23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무기노동교화형	×
최춘길	14.12.		파괴암해죄 비법국경출입죄		

1) 통일부, 『202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23) p. 57; 『조선중앙통신』, 2014.5.30., 2015.6.23.

○○○	16.3	불명확	불명확	불명확	×
○○○	16.3				
○○○	16.5				

비인도적 처우에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실상이 일체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비인도적이다. 억류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건강상태는 어떤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외국인들의 사례를 통해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북한에 735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케네스 배는 회고록에서 외국인들만 수감하는 특별 노동교화소에 자신 혼자만 수감되어 있었다고 적고 있다. 노동교화소 규칙 10가지와 매일의 시간표를 외우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동을 하였으며, 음식이라고는 국수 몇 가닥과 작은 달걀 하나, 채소 몇 개가 전부였다고 한다.²⁾ 이로 인한 영양실조로 몸무게가 20kg 이상 빠져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한다.³⁾ 949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캐나다 시민권자 임현수 목사는 십이지장이 꼬이는 통증, 험악한 조사, 협박과 공갈 및 집요한 추궁, 감옥 안에서의 가스 중독, 이틀 동안 29회나 반복된 설사로 죽음의 고비를 세 번 넘겼다고 회고하고 있다.⁴⁾ 북한 억류 중 혼수상태로 석방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워비어(Otto Warmbier)는 미국 도착 6일 만에 사망하였다. 이후 그의 부모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미국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북한이 워비어를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넘겼을 때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고 들을 수도 없었으며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심각한 뇌 손상으로 눈과 귀가 멀어 주위의 사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한다.⁵⁾ 이 같은 사실들에 미루어봤을 때 억류된 우리 국민들은 별도 시설에서의 강제노동과 형편없는 음식으로 인해 매우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문 및 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국인 억류자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 케네스 배, 『잊지 않았다』 (서울: 두란노, 2016), pp. 211~212, pp. 217~218, p. 221, p. 223.

3) 위의 책, pp. 252~253.

4) 임현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서울: 규장, 2019), pp. 103~107.

5)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vil Action No. 18-977(BAH), p. 1, p. 10.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 및 국제협력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첫째, 국내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2월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서 중점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22년 10월 통일부장관이 최초로 억류자 가족 2명을 면담하는 등 국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4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강제적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WGEID) 회의에 억류자 가족이 참석하여 진술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에 억류자 문제가 포함되었다. 셋째, 정상회담을 통해 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2022년 11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미·일 정상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2023년 8월 18일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억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넷째, 2022년 미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도 한국인 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⁶⁾ 그러나 2018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대화가 빈번히 개최되었으나 억류자 문제는 공식 의제로 제기된 바 없다.

억류자 문제에 대한 국내외 공론화 강화

만 10년을 맞이하고 있는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 첫째, 국립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억류자 문제를 포함하여 국군포로·납북자 등을 주제로 하는 강좌 개설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교재가 소략하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교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케네스 배, 임현수 목사 등 한국계 미국 및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때의 상황을 증언하고 저술을 발간하였는 바, 이들의 회고록과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자료를 작성하여 실상을 전파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신교계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송환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 억류자 3명이 선교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신교계가 국제기독교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북한정권을 압박해야 한다.

⁶⁾ Department of Stat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2 Human Rights Report,” p. 13.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대외적 관심 제고도 필요하다. 국제적 공론화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중 억류자 문제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부대행사(side event)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를 갖고 있는 국내의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적 관심 제고를 위한 양자 차원의 외교적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미 하원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에서 강제실종의 관점에서 억류자 문제를 주제로 하는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양자 협력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유럽연합 의회에서 결의 채택, 청문회 등을 통해 억류자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양자 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생사 확인 및 소재 파악, 석방을 위한 인권외교 강화

현재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우선순위는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생사 여부 확인 및 소재 파악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제3국(이익보호국)을 활용한 영사접견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제3국인 스웨덴을 통해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유나리와 로라링, 케네스 배 등 자국 국민에 대한 영사접견을 실시하였다. 캐나다도 자국 국민 임현수에 대한 영사접견을 스웨덴을 통해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인 억류자들에 대한 영사접견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한 다자외교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첫째, 11월에 채택될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억류자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다자인권외교가 강화되어야 한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에 한국인의 억류문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래 글상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상을 북한에 억류된 ‘다른 국가 시민(citizens of other countries)’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놓여있는 남북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구가 ‘한국 국민(nationals of Republic of Korea)’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한국인 억류자들의 생사확인 및 소재 파악, 석방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둘째, 유엔 강제적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을 적극 활용하여 생사 및 소재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WGEID의 방한 초청 및 설명회 개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WGEID의 통보(communication)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개인청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2024년 11월 4일~15일에 예정되어 있는 북한에 대한 제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 우방 등 유엔 회원국들이 억류자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도록 UPR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하는 보고서에 억류자 문제가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글상자> 2022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억류자 관련 내용

UN Doc. A/RES/77/226 (9 January 2023),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8.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in this regard:

(h) To provide citizens of other countries detain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protections, including freedom of communication with, and access to, consular officers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to whic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and any other necessary arrangements to confirm their status and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ies;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